

예산총칙

2013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50,340,575	10,510,217
일반회계	335,007,488	10,050,225
특별회계	15,333,087	459,993
기타특별회계	15,333,087	459,993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037,837	121,135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800	24
의료급여특별회계	1,258,649	37,759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952,858	28,586
주택사업특별회계	25,000	750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1,604,800	48,144
농어민소득증대사업특별회계	3,342,235	100,267
간척농지개발사업특별회계	177,300	5,319
장흥댐관련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	2,344,259	70,328
장흥군수질개선특별회계	1,589,349	47,68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732,682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 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 할 수 있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다